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84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 박성훈·안상훈·김성원

이인선 · 조배숙 · 이양수

김기웅 · 이헌승 · 박충권

임이자 • 고동진 • 김도읍

서지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"무상대부"에 관하여 「국유재산법」이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국유 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 · 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 · 수익허가로,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바,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 권고가 있었음.

이에 「국유재산법」 등 관련 법령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 를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).

법률 제 호
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 제목 "(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대부)"를 "(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대부할 수 있다"를 "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행 혅

대부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국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적십 자사에 무상(無償)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아 개 정

제23조(국유・공유 재산의 무상 제23조(국유・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(無償)으로 대 부하거나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